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1. 28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욱 의원 등 8명(장호섭, 서민우, 서보영, 황국주, 강한곤, 권숙자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5. 11. 14.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상정 및 의결: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11. 28.)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6조)
-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5조
 - 「건축법」 제2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11. 14.~11. 26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생활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생활주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대상, 위험수목 처리 지원, 지원신청, 지원결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고
 -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 대상 위험수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.
 -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다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 -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경우 등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험수목 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